

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4일  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경기문, 김경훈, 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남창진, 박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유정인, 이민석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태, 채수지, 최민규, 황철규 의원(19명)

### 1. 제안이유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(2021.9.14.)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·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)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,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함.(안 제3조제1항제5호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,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, 특정공사,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,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”을 “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,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, 특정공사,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,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